

第108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2月9日(金) 11時00分

###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의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
11.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

###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洪起瑞議員 外 4人 發議)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의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8.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9.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10.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11.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安載弘議員 外 5人 發議) ..... 2面

(11時00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安載弘議員 外 5인이 제출한 건의요구(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洪起瑞議員 外 4人 發議)
2.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3.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의設置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4.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5.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6.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7.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8.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9.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0.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1.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安載弘議員 外 5人 發議)

(11時03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의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8항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9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運營委員會 洪起瑞 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洪起瑞 運營委員會 委員長 洪起瑞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4절기 중 첫번째 절기로 봄으로 접어든다는 입춘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하시는 사업이 만사형통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종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자로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차, 2차 정례회 기간 중 임의로 선택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예산심사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매년 6월 20일에서 7월 1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9월·10월로 조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정례회에서 하반기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은 시기 또는 업무적으로나 다음년도 예산편성 심사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정례회 집회 개최일자 변경은 상위법 개정과 반드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한 일정을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洪起瑞 運營委員長!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市民行政委員會 李東奎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東奎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李東奎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한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신사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운영과 관련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의 일부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의 계속사용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용시 2일 이상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시설 개방의 제한규정 조항 및 제8조 사용시간 규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에서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또한, 제12조제1호에서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토록 하던 것을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체육시설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다만, 조례 제8조의 사용시간 규정 폐지로 인해 체육시설의 무절제한 야간사용으로 조명등에 의한 전력낭비는 물론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에서 명칭 중 등에서 주관하는 교실을 삭제하고, 종로구 생활체육·취미교실 및 문화센터로 하며 제7조에서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4월 이내로 하던 것을 연중 운영토록 하였고, 제8조제1항에서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제9조제1항 별표2의 수강료 중 주민자치센터와 동청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구청사 및 정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시 월 8회 이하는 5,000원, 월 8회 초과시는 1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0년 11월 6일 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동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취미교실은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수행토록 하고 수강료 등은 1인 월 1만원 이하로 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간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종로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제3항에서 가축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에서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

과 행정규제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권고사항으로서 조례의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 50%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동조합 간의 노사합의에서 '98년 1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 중 제2호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에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노사합의에 따라 '98년 1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다만, 제도 시행 이후인 '99년부터는 판매대금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는 바 이는 환경미화원의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の設置運用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民行政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建設委員會 金福同 委員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金福同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 金福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공사다망한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 10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2000년 재물조사 결과 전산장비 등은 신형모델의 개발속도가 빨라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물품일지라도 구형화로 불용품화 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런 물품에 대하여 서울시 산하기관간에 사용소요 조회를 통해 서로 융통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사용소요 조회기준을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현행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단가 2,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고, 제16조제4항에서 매각시 감정대상 물품을 1,000만원 이상 물품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대상 기준을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2000년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심사분석에서 문제점으로 돌출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물자·예산절약 및 물품관리업무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적절한 방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된 점과 자동차등록의 면허세 폐지를 규정한 법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에 따라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은 자동차 등록 면허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주택 감면대상 면적을 당초 85㎡에서 65㎡로 축소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과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50% 경감하며 기타 감면규정은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며 감면기간을 당초 2000년 1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개정내용이 상위법 개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현행 지방세법에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폭을 확대하고 있음은 비과세대상이 67%인 우리 구 실정에서는 상당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정교부금의 보상적 교부나 장기적으로는 비과세나 과세면제 등 불균일 과세가 입법측면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일반 주민에게 규제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사항 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일반 주민에게 공부 등 열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는 열람을 청구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정신인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의거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열람제한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별도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어서 삭제에 따른 행정의 혼란

이나 주민의 불이익 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와 시조례의 개정 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내지 삭제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재개발 완료 후 환지예정지상의 공유자간 건축합의기간 설정규정은 삭제하고 또 시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방법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국·공유지의 연고권 인정 면적을 50평에서 60평으로 확대하여 국·공유지의 점유권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도록 하였고 가격평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구청 자체확인 가능한 토지대장, 가옥대장은 제출서류 목록에서 제외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나 가격평가 신청서 첨부서류 개정안은 도심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로 정할 사안이 아님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이 '99년 3월 31일자로 보완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6일자로 공포되면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과 과태료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기능은 구청장의 지하수개발 허가시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은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포함 6인내지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하여 독촉절차 및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법령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이 다수 참석하는 것이 지역실정이나 민원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운영과정에서 2인내지 3인 이상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

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 審査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개정건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건의 요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요구(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말씀을 드리면 종로구 평창동 산6번지 외 88필지는 '71년 10월 12일 서울시고시 제65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인가되었고 '74년 1월 21일 본 사업이 준공된 지역이나 준공 당시 일부 토지는 원형상태에서 지목만 대지로 전환되면서 부관을 건축허가시 별

도로 개발행위허가를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규정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의 일부를 개정건의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지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65호로 주택지 조성사업이 인가되었고 '74년 1월 21일 본 사업이 적법하게 준공된 지역으로 준공 당시에 단지내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일부 대지만 조성하였고 일부 토지는 구획만 확정된 원형상태에서 지목만 대지로 변경하면서 이 토지 등에 대하여는 향후 건축허가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거치도록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부당한 준공조건으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8년 12건, '99년 8건, 2000년 11건 등 매년 10여 건씩이 종전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허가 처리된 바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상기와 같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 상황 등을 전혀 반영할 길이 없어 종전 규정에 의거 허가가능 토지가 허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인접토지간에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허가원인자로서 기득권이나 처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경과규정이나 단서규정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처사라는 민원제기에 적극적인 대항논리가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25조 본문 말미에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시행 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별표 I 심의기준에 갈음할 수 있다” 로 개정건의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 건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건의 요구(안)대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적법하게 준공된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막고 인접토지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해소함으로써 우리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

(安載弘議員 外 5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하실 議員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 등의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  
建議要求(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  
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  
합니다.

(11時39分 閉會)

○出席議員 19人

洪承台	吳錦南	宣相善	鄭泰淳
李憲九	千相旭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崔康洵	玄壽漢	洪起瑞
金以煥	安載弘	李東奎	金正大
吳弼根	朴鍾植	劉燦鍾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 健 所 長 李星世